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살게 되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되게 마련이다. 특히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모여 살게 되고 극도로 산업화된 오늘날의 삶의 형태에서는 그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삶의 형태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경쟁에 임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된다.

불행하게도 범죄의 문제는 그 장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발전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 온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범죄라는 사회문제의 크기 (size)와 문제자체의 질적 측면이 한층 심각해져오고 있는 것이다. 지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공통적인 범죄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당황케 만든다.

우리나라의 범죄와 비행 문제 역시 심각성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범죄발생건수는 1968년 333,098건에서 1997년 1,588,613건으로 지난 30년 간 약 4.8배 증가하였고, 인구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도 1976년 504,630건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 810,416건, 1989년 1,073,997건, 1997년 1,588,613건을 기록하고 있다¹⁾. 전반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의 추이를 그래프로 보면 45도에 가까운 상승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1)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98, p. 27.

지난 5년간의 소년범죄²⁾를 보더라도 범죄의 문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소년범죄는 1994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1998년도에는 1994년도에 비하여 48.9%가 증가하여 전체범죄 증가율 41.0% 보다 높다³⁾. 특히 97년에는 93년에 비하여 48.4%가 증가하여 전체 범죄증가율 21.8%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발생건수 가운데 재범자와 누범자에 의한 범죄비율은 전체범죄건수의 약 43.2%에 이르고, 그 가운데 재범 2회 이상이 64.5%이며, 5회 이상도 20%에 이르고 있다. 결국 범죄는 한 번 시작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폭력, 절도 등 5대 강력범죄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이 저지르는 범행의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차 어러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과거에는 범죄집단을 만들기도 어려워서인지 개인 위주이었지만 이제는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범죄하면 도시의 빈민지역에서 소위 교육수준이 낮은 불량배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정도로 알았지만, 이제는 도시나 농촌, 나이가 많은 적든, 젊은 자나 가진 자, 남녀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해주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 속에 청소년들이 범죄에 깊게 관

2)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1999, p. 489.

여될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깊이를 한 층 깊게 해준다. 왜냐하면, 청소년범죄는 청소년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과 가정, 학교 등 관련기관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적절한 개입과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성인 범죄자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범죄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취해야 할 다양한 발달과업 (developmental tasks)을 성취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성인이 되어서도 직업, 정신건강과 행동에 있어서의 문제를 갖게될 여지가 크다고 연구보고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와 비행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과 실질적인 관심을 통하여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막대한 형벌비용 및 교정비용 등 총체적으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 (social cost)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⁴⁾. 그러므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들을 교정교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교화를 위한 제반 활동과 프로그램이 기존의 범죄, 범죄자, 그리고 사법정의 (criminal justice)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교정사업 결과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것이 그 동안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범죄와 범죄자, 사법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행형과 교정정책 그리고 이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다차원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4) 배임호, “비행청소년을 위한 합리적 행동치료 (Rational Behavior Therapy)의 활용방안”, 교정연구, 제9호, 한국교정학회, 1999, pp. 263-264.

2. 연구의 목적

현행의 형사사법체계와 교정체계는 그 한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범죄자가 겪어야 하는 지속적인 악순환은 범죄자의 주변환경을 범죄 이전보다 훨씬 어렵게 만든다. 많은 범죄자들이 범죄 후에 자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요인에 쌓이게 된다. 결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현행의 보복위주의 형사사법체계의 관행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⁵⁾고 본다.

범죄는 그 사회를 사실 그대로 잘 반영해 주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이 범죄문제를 그리고 범죄로 인한 결과(consequences)를 현재보다 한층 심각하게 취급,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한 대처방안을 교정정책과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써 최근 교정선진국에서 연구되고 있고 실제로 제도화단계에 이르고 있는⁶⁾, 보복주의 중심의 전통적 사법정의 개념과는 다른, ‘회복적 사법정의 (Restorative Justice)’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 이론에 근거하여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5) Charles Thomas, "Corrections in America: Problem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87; M.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Pantheon Books, 1977; H. Acton, "The Philosophy of Punishment", Macmillan St. Martin's Press, 1969; J. Reiman,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rison: Ideology", Class and Criminal Justice (2nd ed.), New York: Wiley; R. Schonholtz, "Neighborhood Justice Systems: Work, Structure, and Guiding Principles", Mediation Quarterly, 1984, 5, pp. 3-30.

6) Burt Galaway, "Victim-Offender Mediation by New Zealand Probation Officers: The Possibilities and the Reality", Mediation Quarterly, 1995, 12 (3), pp. 249-269.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crime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이 실천가능한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방법

해외문헌 및 국내의 기존문헌을 조사하고 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보호관찰대상자를 표집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으로는 청소년 연령인 9세부터 24세까지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면접이 이루어진 관계로 15세부터 23세에 달하는 58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본 연구를 위한 면접에 응하였다. 본 연구대상들은 재산범죄자 혹은 비폭력적인 범죄 (nonviolent crimes)로 피해액의 측정이 가능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표집방법으로는 유의표집 (Purposive Sampling)과 우발적 표집 (Availability Sampling)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 범죄자의 상당수가 재산범죄와 관련이 있고 비폭력적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이러한 범행들이 중재에 적당한 요소도 있다.

본 보고서의 뒷부분에 첨부한 설문지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위하여 면접지침 (interview guidelines)으로 활용되었다. 실제 면접에서는 첨부된 설문지보다는 구조화가 덜 된 준구조화된 면접지침 (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lines)을 가지고 면접이 이루어졌다. 보조 연구원은 본 연구내용과 면접지침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면접방법에 대한 자세한 교육과 훈련이 있을

후, 역할훈련 (role play)을 거친 후에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7월 1일부터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9월 중순까지 10주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로 예상보다도 훨씬 긴 면접일정이 소요되었다. 면접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여 정리 분석되었고, 일차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한 후 빈도분석결과 등을 통하여 데이터 입력에러를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입력에러를 극소화하였다.

Ⅱ. 범죄 청소년과 보호관찰, 그리고 교정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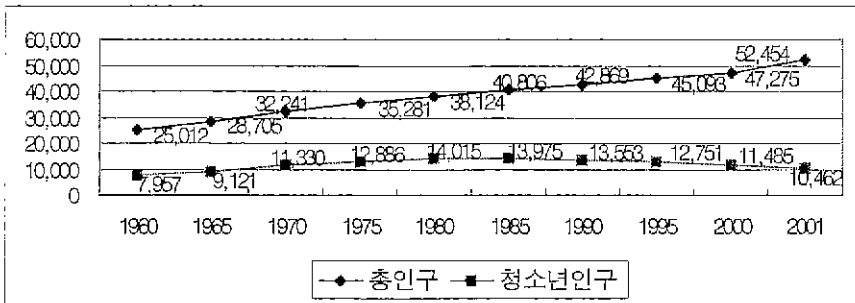
1. 범죄·비행 청소년과 보호관찰
2. 교정의 문제점

II. 범죄 청소년과 보호관찰, 그리고 교정의 문제점

1. 범죄·비행 청소년과 보호관찰

우리나라 총인구는 1998년 7월1일 현재 4,643명이며, 이 가운데 청소년인구⁷⁾는 1,186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⁸⁾.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구는 1980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도 이전에는 총인구증가율보다 청소년인구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총인구나 청소년인구 모두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인구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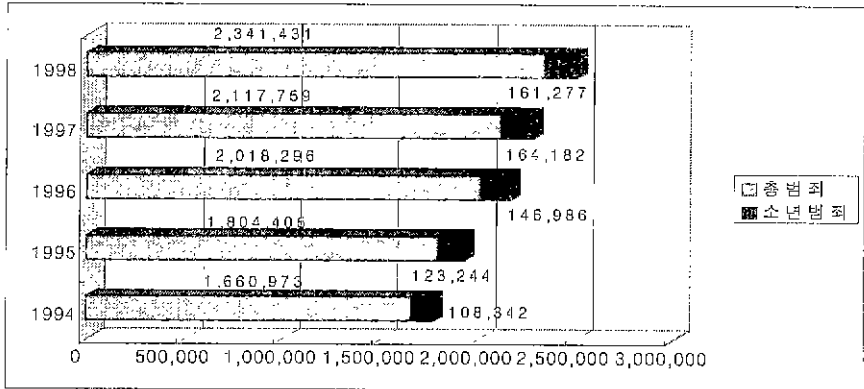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1999, p. 4

<그림 II- 1> 총인구와 청소년 인구추이

7) 9세에서 24세까지 해당하는 인구를 의미함.

8)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1999, p. 3.

최근 5년 간 소년범죄는⁹⁾ 1994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1998년도에는 1994년도에 비하여 48.9%가 증가하여 전체범죄 증가율(41.0%)보다 높다.



문화관광부, 위의 책, 1999, p. 489

<그림 II - 2>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청소년범죄의 성격을 보면, 재범율이 1993년 이후 매년 증가되고 있고 <표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과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97년의 경우 전체 2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의 가족관계에서는 실부모 있는 소년들이 77.9%로 가장 많으며, 범행동기에서는

9)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미만인 소년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법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이상 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청소년백서, 문화 관광부, 1999, p. 488를 참조.

별다른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21.9%로 나타나 유흥비 충당 등 이욕범행 1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소년범죄가 결손가족에서 빈곤과 생존의 기본적 욕구를 위해 일어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실제의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욕구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쾌감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표 II - 1> 청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초 범	전 과			
			소 계	1범	2범	3범이상
'93	110,604 (100)	86,885 (78.6)	23,719 (21.4)	14,111 (12.8)	5,468 (4.9)	4,140 (3.7)
'94	108,342 (100)	85,27 (78.6)	23,215 (21.4)	13,758 (12.7)	5,792 (4.9)	3,665 (3.4)
'95	124,244 (100)	95,245 (76.7)	28,999 (23.3)	16,678 (13.4)	6,774 (5.5)	5,547 (4.5)
'96	146,986 (100)	110,639 (75.3)	36,347 (24.7)	19,643 (13.4)	8,508 (5.8)	8m196 (5.6)
'97	164,182 (100)	121,516 (74.0)	42,666 (26.0)	22,067 (13.4)	10,148 (6.2)	10,451 (6.4)

주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문화관광부, 위의 책, 1998, p. 436.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청소년 가운데 최근 5년 간 학생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소년범죄 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추세인 점이다. 여러 면에서 학생은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기득권 층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아닌 청소년보다 가

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과거보다 범죄에 관여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사회의 단면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은 비행청소년들의 의식의 변화¹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의식, 소외감 등 부정적인 의식은 감소하였으나 자기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소극적인 교우관계로 친구들과의 교류나 의식이 변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셋째, 비행청소년의 무책임성 또는 눈앞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비행성이 상당히 진전된 자들이 가정, 교우, 현재의 자신의 생활방식에 관한 만족도가 낮으며 피해의식, 소외감등 부정적인 의식도 강하다.

다섯째, 비행성이 진전된 자들이 가족들과의 교류가 낮으며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다.

여섯째, 비행억제 수단으로 가족의 역할을 거론하는 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이외의 억제요인도 비행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 및 비행 청소년의 특징¹¹⁾은 다음과 같다.

10) 문제민, “비행청소년의 의식과 가치관”, 형사정책연구소식, 56월, 제 53호, 1999, pp. 34-37.

11) 청소년대화의 광장, 비행청소년상담프로그램 I 개발연구, 1996, pp. 20-24.

(1) 자아개념

비행청소년들은 자기에 대한 만족 및 수용정도가 낮아 자신이 못났고, 열등하며, 쓸모없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으며, 자기가정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낮다.

(2) 감정 및 욕구의 표현능력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충분히 경험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관계형성능력

권위적인 인물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려는 경향

(4) 행동 및 성격의 특징

- ① 충동적이다.
- ②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
- ③ 삶이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조망능력이 부족하다.
- ④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5)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비행청소년의 경우 일반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가정, 이성관계,

신체적인 건강과 외모, 가치관 등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 청소년 비행 및 범죄증가의 주요 요인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10년전과 비교해 볼 때 교육의 수준 측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교육과 정보의 내용, 그 양과 질 그리고 전달 속도면에서도 그렇다.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생활수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의·식·주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발전하였고 편리한 기구나 시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소유할 수조차 없었던 삶의 수단을 갖게 되었고,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사회의 소수 특권층에만 주어지던 기회나 자원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개척해갈 수 있는 기회와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지니는 문제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향이다. 더구나 이러한 청소년의 경향이 긍정적으로 예측되기보다는 그 반대적인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중에서도 지난 몇 년 간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급속한 사회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변화는 세계 각국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른 선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세대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혼돈상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 또는 세계

화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된 여러 가지 가치와 생활방식은 청소년들에게 혼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단시일 내에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생활방식과 가치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사회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지식의 획득을 위한 경쟁 속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겪는 새로운 소외현상이 발생되고 때로는 자포자기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간 존엄성을 무시한 채 비인간적인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 생애 가운데 감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한 청소년들은 사회변화의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 (negative consequences)에 쉽게 노출되는 현상이 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심리적·정신적으로 쉽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vulnerable) 이들을 보호 또는 지원할만한 별다른 사회적 제도나 장치가 없음으로 인하여 유흥환경, 음란성매체, 그리고 불건전한 성인성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환경요인에 자극을 받아 청소년들은 가출과 약물남용, 성폭행과 유흥업소 출입, 각 종 폭력행위, 그리고 기타 비행과 범죄 등 사회문제의 제공자로 낙인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보다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매우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기성세대에 도전과 반항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은 전체 청소년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반시민과 사회 지도층의 문제해결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결국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과 자원의 투입을 주저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인하여 청소년 문제와 이들을 위한 복지가 방치되거나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관적 자세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셋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공동체의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족하다.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급격한 변화에 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가족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불완전한 부모기능에 연유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족 가운데 부부의 이혼은 매년 증가하여 1970년도 초에는 1만 4천건에서 1997년에는 9만 3천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¹²⁾. 특히 가정에 관한 전통적 윤리의식의 변화, 핵가족화에 의한 역기능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과 가정의 불화로 부부간의 이혼의 경향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가족내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던 것과는 달리 국가적 또는 법정과 같은 공공 기제 (formal mechanism)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공적인 문제해결 기제를 통하여 부부간의 문제가 외형적으로는 해결되는 경우일지라도 문제에 관여된 당사자들이나 자녀들의 심리적·정신적인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는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관계가 일시적인지 항구적인지, 변화 가능한 것인지 또는 변화 불가능한 것인지

12) 문화관광부, 앞의 책, 1999, p. 25.

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의 지속되는 갈등 속에서 청소년들은 필요한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넷째,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생 신분인데 바로 학생들에 의한 범죄나 비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학생에 의한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되어 그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범죄 및 소년범죄의 증가율을 능가하고 있고, 소년범죄 가운데 학생에 의한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¹³⁾.

<표 II - 2>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천명, %)

연 도	전체범죄(A)	소 년 범 죄		학 생 범 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B)
'94	1,660,973 (100)	108,342 (100)	6.5	69,611 (100)	64.3
'95	1,804,405 (108.6)	124,244 (114.7)	6.9	82,442 (118.4)	66.4
'96	2,018,296 (121.5)	146,986 (135.7)	7.3	91,750 (131.8)	62.4
'97	2,117,759 (127.5)	164,182 (151.5)	7.8	103,292 (148.4)	62.9
'98	2,341,431 (141.0)	161,277 (148.9)	6.9	99,625 (143.1)	61.8

주 :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
 문화관광부, 앞의 책, 1999, p. 498.

13) 문화관광부, 앞의 책, 1999, p. 497.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의 현장과 관련되는 범죄가 상당히 존재하고 더구나 증가일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느 곳보다도 학교는 신성시되어야 하고 어느 사회에 서든지 그 사회를 위한 미래에의 투자와 관심의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도심의 빈곤지역이나 낙후지역에서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될 만한 일이고 그 원인부터도 찾아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윤리와 도덕교육이 이루어지고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을 펼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타인이나 학우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거나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기 이전에 그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단한 도전을 받게된다. 더구나 어른들보다도 더 비인간적인 범죄를 청소년이 일으키는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사회의 내부에 존재하는 중병상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비행청소년과 보호관찰

우리사회에 범죄자와 비행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들도 문제이지만 그들의 사회환경과 가정환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역시 범죄자와 비행자들을 위한 교정활동을 전개하여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인으로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행형의 일차적 목적¹⁴⁾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마는 그 가운데 범죄와 비행 청소년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지난 1989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

14) 조준현, “행형의 이념으로서 교정에 관한 소고”, 교정연구, 1991, 창간호, p. 1.

시된 이후로 1997년부터는 성인범에게도 확대 실시되고 있는바와 같이, 교도소와 같은 시설내 구금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중추적인 국가 형사정책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1989년 7월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총 282,410명의 소년범죄자를 보호관찰하였으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II - 3>연도별 보호관찰대상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선교유예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 분	가석방	가퇴원	가정폭력
1990	14,789	-	57	12,434	595	1,703	-
1991	18,732	-	153	16,755	567	1,257	-
1992	21,532	1	370	18,752	823	1,586	-
1993	25,751	3	382	22,198	977	2,191	-
1994	28,256	6	499	24,423	718	2,610	-
1995	32,914	50	702	28,299	780	3,083	-
1996	37,512	18	728	32,743	548	3,475	-
1997	46,709	7	3,657	39,710	357	2,978	-
1998	50,869	7	4,929	42,737	476	2,718	2

자료 : 법무부 보호국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1999, p. 567.

보호관찰제도는 무엇보다도 구금형의 악영향을 피하고자 형치별 집행과정에서 생성 발전된 실천적 의미가 매우 큰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범죄자들을 시설에 구금한다는 것이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비효과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의 문제상

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을 구금의 현장인 시설에서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보호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도 형처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형처벌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제도의 발상자체가 매우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지역사회가 그 사건의 영향을 받게되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범죄자가 결국에는 지역사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범죄문제를 직시한 결과로 창출된 제도이기도 하다¹⁵⁾.

사실 행형이념에 있어서 시설내의 처우로부터 사회내의 처우로의 전환은 수용시설효과에 관심을 가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좀 더 많은 교도소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범죄를 줄일 수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으며¹⁶⁾,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자 처우를 해야하는 비중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직업적으로 행하는 범죄자 (career criminal)가 대개 14세 또는 15세부터 20대 초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시작된다고 볼 때, 청소년 비행·범죄자를 위한 보호관찰제도는 그 의의가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지나칠 수 없다. 그러나 교정정책과 제도의 출발이 매우 좋은 배경을 갖고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구체적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전이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그 어떤 접근방법을 통하여 왜곡된 사고와 행동에서

15) 베임호,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학회, 제6권, 한 국교정학회, 1996, pp. 273-274.

16) Loren A.N. Buddress, “Federal Probation and Pretrial Services - A Cost -Effective and Successful Community Corrections System”, Federal Probation, 61(1), 1997, p. 8.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양식으로 변화하게 해 주고 자신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되찾아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 가는 체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치료적 접근 효과는 연구 결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집단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한층 높아진다¹⁷⁾. 이와 같이 집단활동을 통한 어떤 변화와 치료적 접근방법은 범죄를 행한 청소년들을 채우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교정분야에 도입함으로써 교정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2. 교정의 문제점

- 수용시설내의 구금형만으로는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국제적으로도 교정 시설에서의 과밀수용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교정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천문학적인 교정비용을 쓰고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최근 1년

17) Goodman, H., George S. Getzel and W. Ford, "Group work with High-Risk Urban Youths on Probation", Social Work, 1996, 41(4), p. 377 & 380; Regehr, C., & Antle, B., "Coercive influence: Informed Consent in Court-mandate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1997, 42(3), p. 301 & 304; 배임호 외,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대처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자료집, 1997, pp. 179-192.

18) 배임호, "비행청소년을 위한 합리적 행동치료(Rational Behavior Therapy) 활용방안", 교정연구, 제9호, 한국교정학회, 1999, pp. 276-277.

동안 교도소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만 210억 달러를¹⁹⁾ 쓰고 도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교도소를 건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교도소가 각각 30%와 45%가 과잉수용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40개 이상의 주가 연방법원의 교도소 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²⁰⁾. 예를 들어 1993년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에서는 자신의 주내에 최대수용능력의 184%에 해당하는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었다²¹⁾. 교정시설에 수용인원이 최대수용인원을 넘어 초과 수용할 경우 교정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수용 현상은 1970년대 시작된 범죄에의 “강경책”(tough on crime)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소해주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는 증가하는 재소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1991년 한해동안 구금인원 1.2million명을 감안하면, 한 해동안 500명 수용이 가능한 교도소를 매주 건설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한다. 재소자 한사람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교도소 하나의 총 건립비용에서 계산한다면 약 5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하니, 대단한 정부예산을 소비하게 된다.

교정시설의 건립비용 뿐만 아니라 재소자 한 사람을 일년간 수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1995년 미국 법원 행정당국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U.S. Courts)의 자체문서에 의하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범죄자 한사람을 일년

19) Time, 1994, May 17.

20) Harry Mika, "Editor's Notes", Mediation Quarterly, 1995, 12(3), p. 119.

21) Loren A.N. Buddress, 앞의 책, 1997, p. 7.

동안 관리·감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미화 2,344달러인 반면에, 동일한 한 사람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4,783달러 (각주: 여기에는 일인당 평균의료비 3,431달러를 포함한 액수임)라고 하니까 약 10.6배에 상당한 미국 국민의 세금이 드는 셈이다²²⁾.

이와 같이 교정시설을 건립하고 재소자들을 시설에 수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의 주정부 예산 (state budgets) 가운데 자장 빠르게 증액되어 주정부 예산의 8%내지 10%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증액은 고등교육, 환경보호 등을 위한 예산이 줄여지는 대신 할당되고 있다²³⁾. 그렇게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하원들의 정당이 어느 것이든 간에, 정부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제기 되어오고 있으며 특히 형벌 정책에 있어서 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처벌방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소자들의 하루평균 인원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추세가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 12월 현재 수용인원은 7만 4,000명에 이르러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의 적정 수용인원을 5만 6,000명으로 볼 때, 30%나 초과한 상태이다²⁴⁾. 이러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에서 재소자의 ‘교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잉수용의 상황에서는 재소자들 사이에 적대감이 증대하고 심지어는 상호간에 폭력을

22) Loren A. N. Buddress, 위의 책, 1997, pp. 5-6.

23) Greenwood, 1998, p. 136; --Greenwood, Petee W., "Investing in Prisons or Prevention: The State Policy Maker's Dilemma", Crime & Delinquency, 1998, 44(1), p. 136.

24) 배임호,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과적 도입, 운영 및 정착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회, Vol. 39, 1999, p. 134.

사용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수용시설이 지어질 때 세워진 적정 인원이 수용된다하더라도 재소자들을 집단적으로 기거하게 생활에서 미치는 악영향이 보고되고 예상되는 형편인데, 이와 같은 과밀수용의 상황에서 행형의 목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상인의 생각이라 볼 수 없다.

교정시설에 수용인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정부에게도 지출 비용이 그 만큼 커진다. 우리의 경우 1인 재소자 수용 연간 경비는 6,155,000원인 것을 보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며,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 한사람을 위한 비용은 37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물론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여 모든 범죄자들을 보호관찰과 같은 처벌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교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 기존의 형벌은 범죄로 인한 영향 (consequences)에 대하여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도 않다.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할 때, 벌을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행동에 대한 보복 (retribution)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부여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수용되어 있는 동안 겪게될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의미이지만, 벌을 주는 자나 이러한 사건을 듣는 자들의 내심에서는 이번에는 ‘맛좀 봐라’는 메시지가 가장 크게 소리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행형제도에서 범죄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는 매우 가치 있는 연구의 대상이다. 그들이 지지는

25) 유석원, “보호관찰제도의 운영방안”, 보호, 법무부, 통권4호, 1997, p. 62-63.

생각과 가치, 또는 그들의 과거 행동이 형벌을 받는 동안 변화가 있는지 그 여부는 추후 그들의 행동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형벌을 마치고 또 다시 범죄하는 자가 상당수가 있다는 것은 그 형벌이 범죄자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 물론 범죄자 가족에게 그의 범죄로 인하여 겪게되는 고통과 상처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

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때로는 항구적인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남김으로써 무죄한 개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받은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또는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부모, 형제, 친구, 교사,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이웃, 직장 동료 등의 태도, 특히 분별 없는 소문, 호기심을 드러낸 시선, 또는 몰래 이루어지는 헐담 등으로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가 한층 심할 수 있다²⁶⁾. 범죄 이전과는 달리 범죄피해자가 되면, 개인의 세계가 질서가 없어지고 평온을 잃게되며, 범죄피해자는 그가 잃은 자신의 온전함(wholeness)²⁷⁾을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다²⁸⁾. 이처럼 범죄는 개인 뿐 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행복과 평화를 짓밟아 놓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그렇지만 기존의 형벌과 행형제도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

범죄가 발생되거나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지역주민들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하

26)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有責性)”,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37호), 1998, pp. 70-71.

27) Howard Zehr, *Changing Lenses*, Scottale, Pennsylvania: Herald Press, 1990, p. 25.

28) 배임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교정연구, 제 5호, 1995, pp. 230-231.

여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신변을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삶의 공동체를 파괴한다. 또한 범죄는 지역 공동체에 이룩된 상호 신뢰의 관계를 파괴하여 큰 혼돈과 고통에 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형벌은 범죄자가 잡혔기 때문에 그에 의한 범행이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그 주민들에게 당분간만이라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 바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잊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뿐 지역사회가 본래의 신뢰를 되찾고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의 지역공동체는 하루하루 튼튼해지기 보다는 날이 지날수록 허약해지고 있다.

Ⅲ.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1. 회복적 사법정의의 최근 발전동향
2. 회복적 사법정의의 내용과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3.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III. 회복적 사법정의 (Restorative Justice)

기존의 전형적인 형벌 방법인 구금형은 수용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교정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받는다. 국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연구결과로 발표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구금형의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그의 부정적 영향이 보고됨으로써 교정시설내의 환경개선과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정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촉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가지 형처벌의 형태가 연구되고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정활동 (community-based corrections)과 사회봉사명령 (community service sentencing)과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형처벌이 기존의 구금형을 대신하여 이 그 효과 면에서 긍정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있다²⁹⁾. 특히 범죄와 비행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심리적, 성장발달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뿐아니라,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사회화와 사회적응의 기회가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들에게는 다양한 차원의 교정중심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지원될 때, 보다 나은 교정효과를 기대할 수 가 있을 것이다³⁰⁾.

29) Nieto, M., Changing Role of Probation in California's Criminal Justice System, Sacramento, California: California Research Bureau, 1996, p. 10; Feeley, M., R. Berk and A. Campbell, "Between Two Extremes: An Examination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Community Service Order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S. Sentencing Guideline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1992, 66(1), p. 172

30) Bowker, L. H., Corrections: The science and the ar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2, p. 450; Imho Bae, "Mediation as a Social Work Practice Method for Youth Problem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1995, 5(2), pp. 21-29; 배임호, "비행청소년을 위한 합리적 행동치료(Rational Behavior Therapy) 활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이해와 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기초될 때 가능하다. 범죄를 보는 시각 (perspectives)이 달라질 때, 범죄와 비행문제 해결방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환언하면 그동안 전통적인 구금형의 근저에 있는 보복 위주의 형벌 이념으로부터 그 어떤 새로운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형벌 방법이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형벌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게 되었고 이들의 공통분모적인 형벌 방향은 범죄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는 물론이고, 범죄피해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범죄와 범죄가 미친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범죄자를 단순히 구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처벌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자,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범죄의 상처와 손상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³¹⁾.

1. 회복적 사법정의의 최근 발전동향

회복적 사법정의를 위한 지지와 채택을 위한 노력은 이제 UN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2000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Vienna)에서 열렸던 UN범죄회의 (UN Crime Congress)를

용방안”, 교정연구, 제9호, 한국교정학회, 1999, pp. 265-267.

31) 이러한 관점의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배임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전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교정연구, 제5호, 1995, 특히 pp. 236-2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들 수 있다. 각 국의 대표와 파견된 관련 NGO 대표들이 범죄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놓고 발표와 토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정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짐으로써, 원래는 취급되기로 한 주요이슈가 아니었지만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이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결실로서 채택된 선언문 (Declaration)에도 회복적 사법정의를 포함시켰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30개국의 지지서명을 얻어 승인이 된 것이다. 이 위원에서는 다음 2년간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회복적 사법정의의 기본 원리들 (Restorative Justice Basic Principles)이 UN회의에서 채택되게 된다면, 각 나라들이 범죄문제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아울러 범죄예방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회복적 사법정의에 대한 지지는 지난 1970대 초 이래로 특히 북미에서 확산되어 오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형벌이념을 실천에 옮기는 프로그램이 지난 25년여 동안 현저히 증가되어 오고 있다³²⁾. 1994년에는 미국의 법률가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손해배상 (restitution)이라는 형벌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제도를 사법체제

32) Umbreit, M., "Restorative Justice through Mediation", *Overcrowded Times*, 1996, 7(3); Boers, K., & Sessar, K. "Do People Really Want Punis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of Restitution, Needs for Punishment and Fear of Crime", In K. Sessar & H. Kerner (Eds.), *Developments in Crime and Crime Control Research*, New York: Springer, 1989.

에 정식 도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협회는 미국 전역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³³⁾.

이러한 발전과정을 걸쳐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 (Victim - Offender Mediation Program : VOMP)이 오늘날에는 <표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다. 특히 New Zealand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구금형의 대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체 국민의 수용정도를 수렴한 결과 매우 강한 지지를 확보한 뒤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III-1>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의 국제적 활용상황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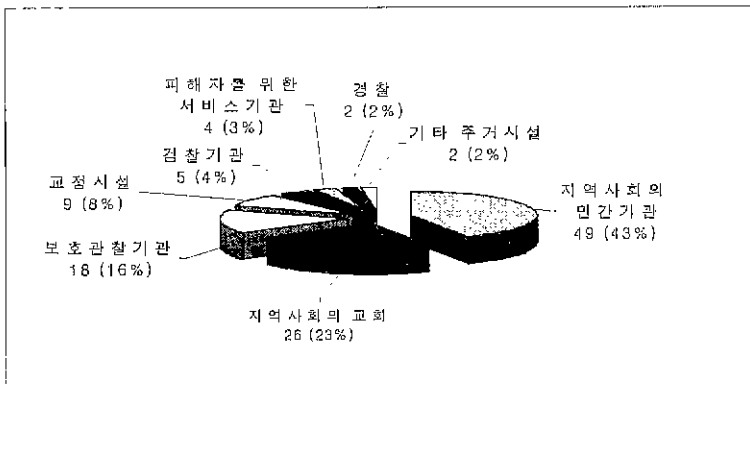
국 가	활용되고 있는 programs 수
Australia	5
Austria	17
Belgium	31
Canada	26
Denmark	5
England	43
Finland	130
France	73
Germany	348
Italy	4
New Zealand	Available in all jurisdictions
Norway	44
South Africa	1
Scotland	2
Sweden	10
United States	289

source : Data from Umbreit(1994) & Wright(1996).

33) Umbreit, M., "Restorative Justice through Mediation", Overcrowd ed Times, 1996, 7(3), p. 9.

34) Mark S. Umbreit & J. Greenwood, National Survey of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s on the United States, 1998, p. 237.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4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가 위탁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23%로 나타나 있다. 보호관찰소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교정시설에서, 검찰기관에서, 또는 경찰에서도 맡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III-1> 미국에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기관별 현황

2. 회복적 사법정의의 내용과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정의는 다른 나라들에서 현행 사법체계 (criminal justice system)에 대한 불만족 내지는 실망감이 증가하고 있음이 국민의 의견에서 나타나고 이 체계를 겪어본 사람들의 견해에서

표현된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연유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형벌에 대한 불만족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또는 범죄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조기 석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불만감에는 사법체계의 진행속도가 더디며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는 데서 기인하기도 하고, 형벌체계에서 일반 시민들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원하는 여망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³⁵⁾. 사실 이러한 불만족 가운데 가장 핵심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현행 형벌제도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범죄자와 관계되는 것인데 그들이 일정한 처벌만 받은 뒤에는 과거 범죄행동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거나 조치 없이 귀가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이 현행 형벌제도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증폭시키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보복위주의 사법정의(retributive justice)가 아닌 회복적 사법정의에 대한 지지운동(movement)으로서 지지를 얻고 있다³⁶⁾.

회복적 사법정의가 지니는 여러 가지 관점과 의미를 단순한 몇 문장으로 나타내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문헌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 두 개의 정의(definition)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회복적 정의를 가장 앞서서 이념적 기본 골격을 제시한 Howard Zehr (1990)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제

35) Correctional Services of Canada, Restorative Justice Begins with You and Me, Restorative Week, 1999 November, p. 4.

36) Correctional Services of Canada, 앞의 책, 1999 November, p. 4.

시하고 있다.

“현행 사법체계에서나 보복위주의 사법정의 모델에서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해놓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유죄한 경우에 해당되는 행동이다. 그렇게 때문에 사법정의는 비난(blame)여부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며, 범죄자와 국가가 서로 상반되는 관계 속에서 체계적인 법칙 (systematic rules)에 따라 고통을 부과하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정의 모델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것이고 곧 상대방과의 관계 (relationships)를 깬 것이므로, 잘 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to make things right) 하는 의무를 부과시킨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의 결과로 인한 악영향을 고치고 치유하는 (healing) 일종의 방법이며, 이러한 사법정의를 위하여 범죄자가 지금까지는 처벌만 받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 새로운 모델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느낌과 아울러 관련된 이슈에 관여하고 이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책임을 묻게 된다. 이 새로운 개념의 사법정의는 범죄를 이해하는 관점이나 처벌 (punishment)에 대한 의미가 전통적인 보복위주의 사법정의와는 다르다. 변화된 행형 철학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일과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한 파괴된 상태를 수선 (reparations)하도록 하는 규정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³⁷⁾. <표Ⅲ-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복 위

37) Martin Wright, "Victim-Offender Mediation as a Step Towards a Restorative System of Justice", Restorative Justice on Trial: Pitfalls and Potentials of Victim-Offender Mediation-International Research Perspectiv

주의 사법정의와 회복적 사법정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끼친 손상을 고치도록 (repairing social harm) 요구하고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

<표Ⅲ-2> 보복적 사법정의와 회복적 사법정의의 개념³⁸⁾

	응 보 주 의	회 복 적 정 의
1. 범죄에 대한 이해 ¹⁾	*범죄는 위법행위로써 국가 (state)를 거역한 것임 *위법행위가 법규정을 따라 기술적(technical)용어로 한정됨	범죄는 개인을 거역한 것이며 또한 관계를 파괴시킨 것 위법행위는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전체 맥락에서 이해됨
2. 사법정의에 대한 개념 ²⁾	*범죄자와 국가사이의 상호경쟁적 관계에서 법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여 이에따르는 고통을 부과하는 것	이러한 범죄의는범죄피해자, 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범죄로 인한 상처를 고치고 화해를 갖여올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참여케 함.
3. 사법정의 (justice)에 대한 여러 측면 들 ³⁾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중심 *과거에 초점을 둠 *범죄에 관계된 사람들의 욕구는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부차적 임	문제해결이 중심 미래에 초점을 둠 욕구가 우선적임

es (Heinz Messmer and Hans-Uwe Otto (eds.)), Netherlands: Kluwer Publishing Company, 1992, pp. 525-526.

38) Howar Zehr, 1990. 베임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전: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교정연구, 제5호, 1995, pp. 241-242 에서 재인용.

	응 보 주 의	회 복 적 정 의
	*서로간에 적대적으로 싸우는 모델 *서로간에 차이점들이 강조됨 *범죄자가 저지른 해(harm)에 해를 정정하도록 규정 *범죄자에 쏠림. 피해자는 무시됨 *국가와 범죄자가 핵심 *손해배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 *국가가 범죄자에게 조치를 취함 범죄자는 피동적임 *국가가 독점적으로 사건처리 *범죄자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없음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악화됨 *반과 용서를 못하게 함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 가 격려됨	- 대화하는 모델 - 서로간의공유점을추구함 - 상응하는 해를 부과 - 피해자의욕구가 중요시됨 - 피해자와 범죄자가 핵심 -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임 - 범죄자가 문제해결에 일익담당 - 피해자, 범죄자, 지역사회가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인 - 범죄자는 문제를 해결해 야할 책임 있음 - 지역사회로의 범죄자 통합이 증가됨 - 반성과 용서가 격려됨 - 상호성(mutuality)과 협력이 격려됨

이러한 메시지를 위해서는 범죄와 관련된 범죄피해자와 범죄자, 그리고 관련 지역사회가 문제를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받게 된다. 회복적 사법정의의 개념에서 강조되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범죄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회복되며, 범죄자에게는 범죄의 부정적 영향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전해주게 된다³⁹⁾.

청소년사법정의 (juvenile justice)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관련

되는 것이며 그들이 무엇인가 해야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청소년들을 처우할 때 그들의 단점이나 결핍된 점 (deficits)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정의에 입각할 때는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 (care)을 가지고 범죄행위에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요구 (specific requirements) 되는지에 극복하게 되며 범죄자가 직면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보다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접근은 범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보다는 범죄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사법정의의 새로운 측면에서 이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될 때,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가 만나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지역사회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³⁹⁾. 이러한 회복적 사법정의는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⁴¹⁾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다섯 가지 점⁴²⁾을 들면 다음과 같다.

39) Rob White, "Social Justice, Community Building, and Restorative Strategies", Contemporary Justice Review, 2000, 3(1), p. 62.

40) Gregg Barak, "Repressive Versus Restorative and social Justice: A Case for Integrative Praxis", Contemporary Justice Review, 2000, Vol. 3(1), p. 41.

41)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배임호, Social Work in Criminal Justice: Its Demand and Response, Hong Ik Jae Publishing Co., 1993, pp. 40-51과 배임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전: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교정연구, 1995, 제5호, pp. 227-251을 참조해주시기 바람.

42) Susan Shape, Restorative Justice: A Vision for Healing and Change, Edmonton Victim Offender Mediation Society, 1998; Correcti

첫째, 범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온전한 참여와 합의에 도달하기를 권고한다.

둘째, 범죄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깨어진 부분을 치유하고 복구한다.

셋째, 범죄행위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범죄자가 직접 담당하도록 한다.

넷째, 범죄로 인하여 나누어진 관계들을 연합시킨다.

다섯째,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고 지역사회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한다.

3.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의 효과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정의의 형벌이념을 구체화시킨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교정선진국들 가운데에는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⁴³⁾. 먼저 범죄자가 자신이 범한 행동의 책임을 타인이나 사회적 모순 등에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게되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들의

onal Services of Canada, Restorative Justice begins with You and Me, Restorative Justice Week, 1999 November, pp. 14-21에서 재인용.

43) Martin Wright & Burt Galaway, 1989, pp. 14-55; Mark Umbreit, Victim Meets Offender: The Impact of Restorative Justice and Mediation, New York: Criminal Justice Press, 1994, pp. 1-13; Imho Bae, 1993, pp. 40-51.

책임을 극도로 부인하거나 회피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 못됐는지를 알게될 때 비로소 반성(repentance)이 시작된다. 범죄행위의 책임을 타인이나 사회에 돌리는 한 ‘교정교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비행 및 범죄청소년의 경우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드물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중재프로그램을 통하여 범죄자는 피해자의 보복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격려와 용서를 받음으로써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단면을 체험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계기는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과 그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물론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든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에게 고통과 상처를 입힌 자와 대면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범죄를 당하면서 갖게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예를 들어 “하필이면 왜 나에게 범죄 하였는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또 다시 나에게 범죄할 것인가?” 등 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가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일 경우 피해자는 한층 동정심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restitution)을 받을 경우는 서로의 관계가 매우 고무적이 되며, 피해자 자신이 과거 어린 시절 실수하여 잘못을 했던 기억을 되돌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상처(trauma)에서 회복되는 경험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일정한 절차에 따르는 중재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간의 적대적 관계(adversarial relationship)를

뒤로하고 관계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가시적 또는 상징적 손해배상(symbolic restitution)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역시 범죄자를 이해하게 되고, 양당사자 가족들과 지역사회는 어려운 문제상황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생동감 있는 역동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구금형벌보다 교정비용 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IV. 조사결과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서 여자 3명 과 남자 55명, 전체 58명이 면접에 응하였다. 보호관찰 2년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53.5%, 그 다음이 6개월로 37.9%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IV-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의 주요 연령은 17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체 24명으로 41.4%이었다. 아울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학교를 중퇴한 응답자가 54.8%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어느 학교단계이든 졸업한 경우는 10.3%에 그치고 있어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비행청소년의 연령, 학력, 그리고 직업

	도 수	누적도수	상대도수 (%)	누적상대도수 (%)
연령				
15	3	3	5.17	5.17
16	7	10	12.07	17.24
17	11	21	18.97	36.21
18	12	33	20.69	56.90
19	12	45	20.69	77.59
20	6	51	10.34	87.93
21	4	55	6.90	94.83
22	2	57	3.45	98.28
23	1	58	1.72	100.00
학력				
무학	0	0	0.00	0.00
초중퇴	2	2	3.45	3.45
초졸	1	3	1.72	5.17
중재	2	5	3.45	8.62
중중퇴	15	20	25.86	34.48
중졸	2	22	3.45	37.93
고재	19	41	32.76	70.69
고중퇴	9	50	15.52	86.21
고졸	3	53	5.17	91.38
대재	3	56	5.17	96.55
대휴학	1	57	1.72	98.28
무응답	1	58	1.72	100.00
직업				
학생	24	24	41.38	41.38
퀵서비스종사자	4	28	6.90	48.28
일용직 노동자	3	31	5.17	53.45
식당종업원	4	35	6.90	60.34
회사원	2	37	3.45	63.79
서비스직종사	6	43	10.34	74.14
무직	15	58	25.86	100.00
합 계		58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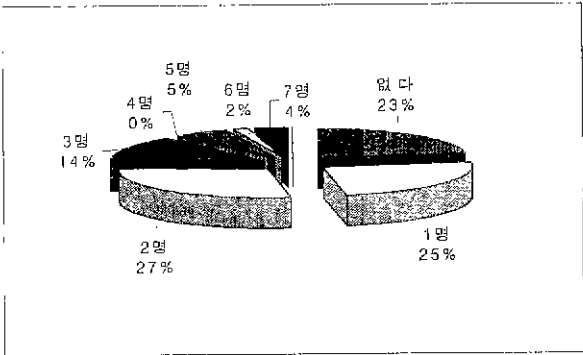
이 들이 학교를 중단한 이유를 보면 자퇴가 46.6%로 가장 많고, 집안형편이 곤란하여가 6.9% 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퇴가 많은 원인을 보면, 학생의 경우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학교에서 자퇴를 권유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하는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처벌할 경우 동일학교를 계속하여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라도 학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자퇴를 권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학생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안고있는 학생을 내쫓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범죄를 지속하게 하는 경향을 <표Ⅳ-2>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를 중간에 포기한 경우 범죄의 재범수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아, 학업을 시작하였으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과거 범죄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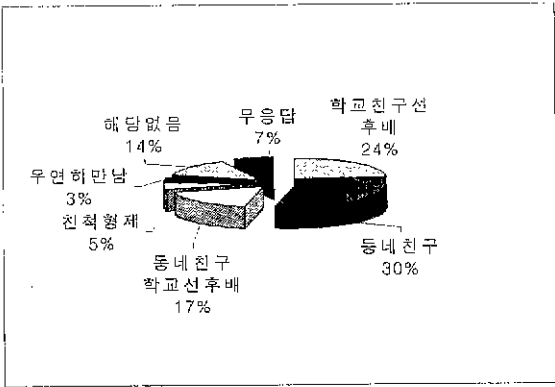
행 열 전체%	없다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행합계
중퇴자(초/중/고)	10 38.46 40.00 17.24	7 26.92 63.64 12.07	3 11.54 21.43 5.17	3 11.54 75.00 5.17	2 7.69 66.67 3.45	1 3.85 100.00 1.72	26 44.83
재학자(중/고)	9 42.86 36.00 15.52	3 14.29 27.27 5.17	7 33.33 50.00 12.07	1 4.76 25.00 1.72	1 4.76 33.33 1.72	0 0.00 0.00 0.00	21 36.21
졸업자(초/중/고)	1 16.67 4.00 1.72	1 16.67 9.09 1.72	4 66.67 28.57 6.9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6 10.34
대학생(재학휴학)	4 100.00 16.00 6.9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4 6.90
무응답	1 100.00 4.00 1.72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0 0.00	1 1.72
열합계	25 43.10	11 18.97	14 24.14	4 6.90	3 5.17	1 1.72	58 100.00

응답자들 가운데 수강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극히 드물었으며,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22.4%, 80시간 17.2%, 200시간이 6.9%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있었다. 이들이 이번 사건에서 관련된 죄명을 보면 특수절도가 58.6%, 절도 25.9%이며 이 외에 특수강도, 강도, 그리고 사기 등의 범죄를 행하였는

데, 놀랍게도 이들 가운데 77.6%가 공범이 있다는 것이다. 공범이 3명 이상인 경우도 25.9%가 되었다. 공범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학교에서 친구든 선후배로 만나는 것은 24.1%, 반면 동일지역에 주거하는 경우가 29.3%에 해당한다. 여기에 동네에서 만나고 인연이 학교까지 연결되는 경우를 합쳐, 결국 학교와 동네에서 만나 공범이 되는 경우가 70.7%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다.



<그림 IV-1> 범죄과정에서 공범의 유무와 공범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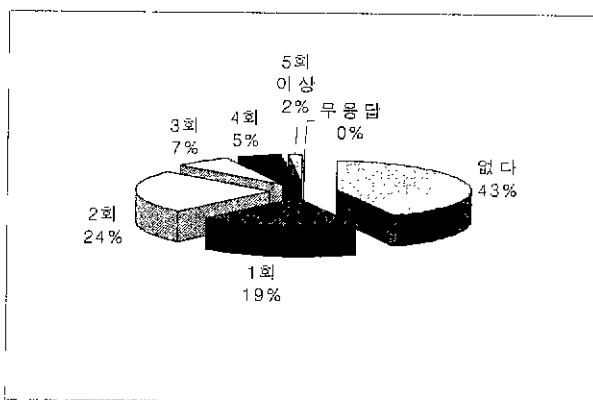


<그림 IV-2> 범죄과정에서 공범과의 관계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서는 “돈이 필요해서”가 25.9%, “공범이 유혹해서”가 22.4%로 둘째로 많이 지적한 이유이다. 특히 할 만한 것은 범죄라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재미’로 행한 이유 없는 경우가 25.8%에 달하였다. 왜 범행을 하는지도 모르는 특별한 동기 없이 한 번 해보는 경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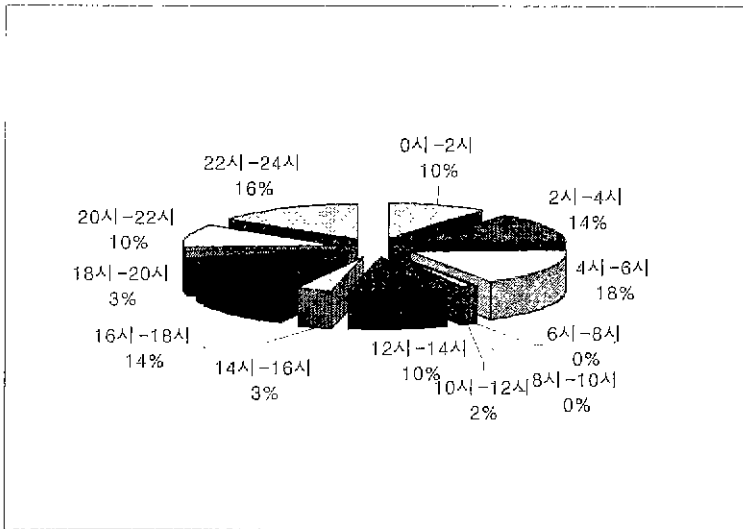
본 연구결과 범죄청소년들이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피해액은 1,823,306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은 약 2,000만원에 상당하는 경우가 두 케이스 있었다⁴⁴⁾.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56.9%가 이번이 첫 번 행한 범죄가 아니다. 이들의 과거 범죄를 보면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발각된 것이 17.2%, 빈집털이 와 금품갈취가 그 다음의 주된 범행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50%가 과거에 가출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어떤 면으로든 가출이 이들을 범죄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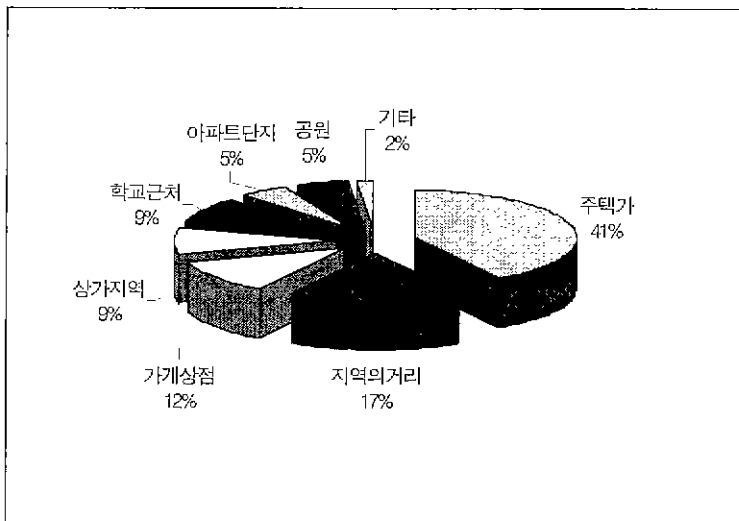


<그림 IV-3> 범행경력

44) 재산상의 피해를 추정할 수 있었던 49 케이스를 집계하여 계산한 평균치임.



<그림 IV-4> 범행시간



<그림 IV-5> 범행장소

청소년들이 범행을 한 시간은 주로 밤 8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67.2%이었다. 범행장소와 관련하여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타지역 보다 오히려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 거리나 주택가, 학교부근이 상당수 범행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학교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거듭 나타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과 범죄를 행한 후의 범죄에 대한 태도를 문의하였다. 범죄이전에는 범죄에 대하여 별 생각이 없었거나 잘 몰랐다가 의외로 58.6%로 나타났고, 나쁜 일이거나 해서는 안될 행동으로 본 것이 29.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범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86.2%로 범죄를 행하기 이전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현상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은 주위사람의 충고나 부정적인 인식에서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자신이 처벌과정을 거치면서 하기 싫은 것을 해야하는 고통에 의한 것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고생하게 만들어 범죄 후에 가장 죄송하게 생각하는 대상이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63.8%이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저를 나아주신 분들인데 이렇게 까지 됐으니깐요”, “여기 저기 불러 다니시고 수도 없이 면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깐”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막상 직접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는 단지 22.4%만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청소년의 나이를 막론하고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고유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강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 합리

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런 잘못 없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와 막심한 손해를 당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야할 대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와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무죄한 피해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교육·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행동이 어떠한 것이며, 이를 재인식할 필요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에는 주위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바람직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 (strength)마저도 칭찬 받은 적이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가운데 내성적 성격을 가진 청소년들에게서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그들은 범죄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사전에 알았는가 ?

본 연구에 참여한 비행청소년들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전에 안 경우가 27.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주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르거나 크게 개의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하게 된다고도 생각된다.

<표 IV-3> 범죄피해자에 대한 악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도

변수값명	도수	누적도수	상대도수 (%)	누적상대도수 (%)
매우잘알았다	5	5	8.62	8.62
잘알았다	7	12	12.07	20.69
알았다	4	16	6.90	27.59
몰랐다	19	35	32.76	60.34
생각해본적없다	4	39	6.90	67.24
해당없음	4	43	6.90	74.14
무응답	15	58	25.86	100.00
합 계		58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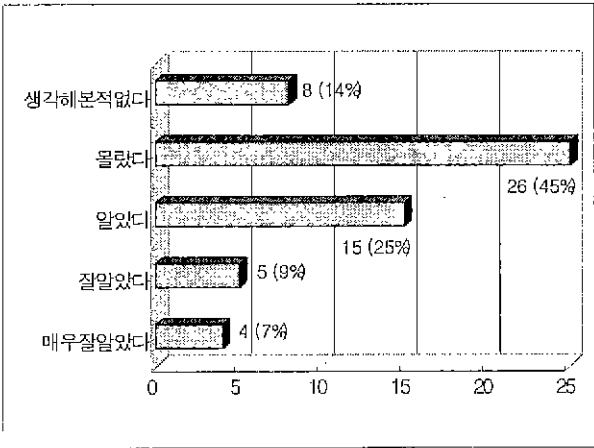
자신들의 피해자가 겪을 악영향을 사전에 아는지의 여부와 응답자의 학력과는 별다른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연령과는 다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대의 응답자 보다는 20대의 응답자가 피해자의 악영향을 사전에 좀 더 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의 인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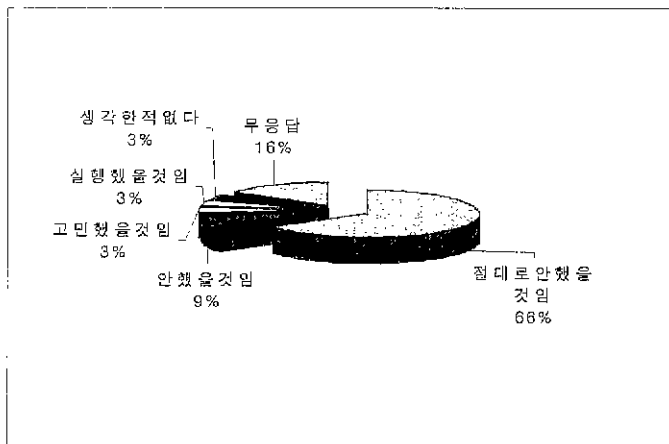
행 열 전체%	알았다	몰랐다		행합계
10대(15세-19세)	12 26.67 75.00 20.69	32 71.11 80.00 55.17	1 2.22 50.00 1.72	45 77.59
20대(20세-23세)	4 30.77 25.00 6.90	8 61.54 20.00 13.79	1 7.69 50.00 1.72	13 22.41
열합계	16	40	2	58
%	27.59	68.97	3.45	100.00

▪ 그들은 범죄 후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사전에 알았는가 ?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범행 후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알았었다고 한 경우가 41.4%, 몰랐다고 한 경우가 44.8%로 더 많았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를 몰랐다고 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면 무려 58.6%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올 지에 대하여 몰랐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매우 관심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만약 자신들에게 닥쳐올 결과를 알았다더라면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청소년들이 77.6%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범죄예방과 재범방지에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곧 한 번 잘못된 행동을 행한 청소년들에게 또한 일반 청소년들까지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치려야할 결과를 미리 교육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IV-6> 응답자가 사전에 자신에게 다가올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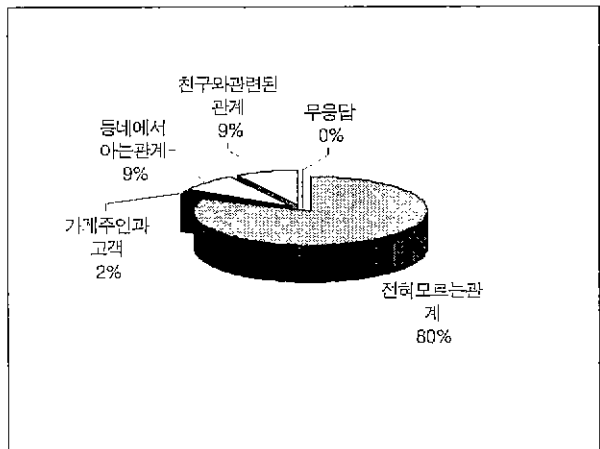


<그림 IV-7> 응답자가 사전에 자신에게 다가올 결과를 알았을 때의 범죄실행여부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범행 뒤에 닥치게 될 결과를 사전에 인식하는 것과 응답자들의 학력과는 별다른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의 연령과 비교하여 본 결과 10대의 청소년들의 34.3%가 사전에 결과를 알았다고 하였고, 반면 20대의 청소년들은 69.2%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아, 나이가 들수록 자신들의 행동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은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겠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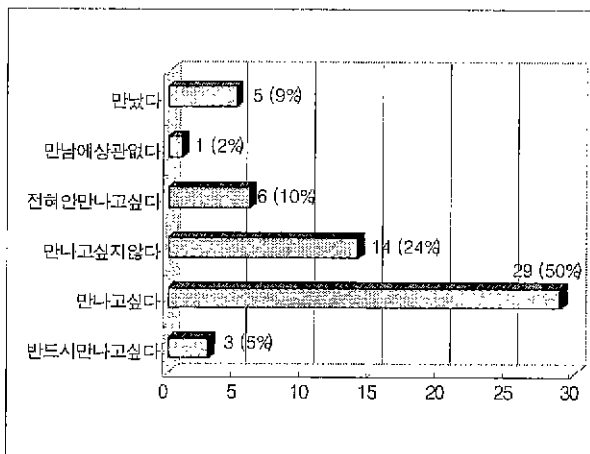
범행한 청소년들의 피해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전체의 81%이었고, 나머지는 생활 주변에서 아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만약 자신들의 피해자를 만날 수 있다면 만나기를 원하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만날 의지가 있는 응답자는 55.2%로 나타났고, 이들은 만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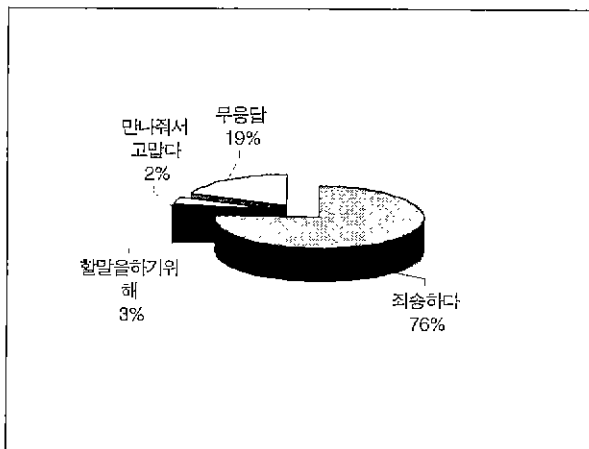
<그림 IV-8> 응답자의 피해자와의 이전 관계

“용서를 받고 싶어서”, “오해를 풀고 싶어서”, 또는 “과거를 청산하고 싶어서” 등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였고, 죄송한 표현을 하겠다는 응답이 75.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IV-9>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겠다고 한 응답자가 34.5%가 되지만 이들의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보면 “얼굴 마주 보기가 싫어서”, “죄송하기 때문”, 또는 “사건을 회고하기가 싫어서” 등으로 나타나 피해자를 만날만한 또는 과거 잘못을 직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격려와 자신의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가 예측된다면 이들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과거행동을 대처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피해자와의 이전관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가 (63.6%) 몰랐던 경우보다 (53.2%)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한 층 더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범의자가 이전의 피해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관계에로의 회복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학력과 범죄경력유무는 피해자

를 만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으며,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10대 응답자가 53.3%, 20대의 61.5%가 피해자를 만날 의지를 보여서, 연령이 든 청소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대면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9> 범죄피해자를 만나고 싶은 의도여부



<그림 IV-10> 범죄피해자를 만난다면 하고 싶은 말

응답자가 자신의 피해자가 겪게될 악영향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피해자를 대면할 의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악영향을 미리 알고 있었던 청소년들은 피해자를 만나기 꺼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악영향을 몰랐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만남에 보다 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과거행동의 결과 (accountability)로 인한 악영향을 바로 잡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남보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 고쳐보겠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고, 직접 피해자에게 흠친 것을 돌려주고 대면함으로써 앞으로는 몇몇하게 살고 싶다고 한 응답이 31%로 분석되었다. 동일한 질문에 응답자의 학력과 연령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과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안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흠친 물건을 반환하거나 대면하는 것을 18.8%로 지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모르고 범죄한 경우에는 34.8%로 나타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V. 결론, 제안 및 시사점

1. 발견사항과 시사점
2.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운영방안
3. 논의 (discussion)

V. 결론, 제언 및 시사점

1. 발견사항과 시사점

범죄의 문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가장 큰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국내의 상황만 하더라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양적 측면이나 그 내용 면으로 볼 때 염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남녀노소, 도시와 농촌, 빈곤자나 가진 자, 결혼 가정이나 실패 부모의 가정의 자녀들, 이제는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든 범죄를 행하는 경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다. 이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되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할지 매우 막연해지는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한번”, “친구들이 하니까”, “재미있잖아요”라고 그의 범죄동기를 이야기 할 때는 더 이상 할 말을 잃는다. 이 것이 오늘날 우리와 비행 청소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비행과 범죄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보복위주의 형벌이념만으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교정선진국에서 교훈으로 얻어진 바다. 구금형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법정의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교정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복적 사법정의에 입각한 비행청소년을 위한 범죄자피해자·

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의 실천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비행 및 범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사항과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비행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어느 단계에서든 중퇴자가 절반이 넘었으며 (55%), 학교를 끝까지 졸업한 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중퇴자와 졸업한자를 비교해 볼 때, 중퇴자의 경우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문제상황을 범죄로 발전시키지 않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것이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겠다. 흔히 학교에서는 비행이나 문제가 발생되면 자퇴를 권유하여 다른 학교로 전출가게 하는 것을 하나의 학생을 위한 배려차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어떤 면에서는 처음 학교가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학교마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가운데 피해자가 속출하고, 학생 자신은 멀고 험난한 방황과 문제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둘째, 비행청소년들의 대부분이 (78%) 한 명 이상의 공범이 있었다. 최근의 연구논문들이 범죄의 집단화경향을 보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심리가 작용하여 집단에 참가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일 뿐 아니라 서로의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욕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로가 범죄로 인한 결과의 책임성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자위심리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공동화 현상은 그들로 하여금 대담하고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를 버젓이 행하게 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청소년이 범행을 행한 경우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accountability)을 지울 수 있는 사법정의의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문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범을 만나게 되는 곳은 71%의 응답자가 학교에서나 동일한 주거지역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더구나 이들 장소가 역시 범행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지역사회와 학교환경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재미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26%나 되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은 유흥비를 위해서, 충동에 의해서 등 나름대로 청소년기의 성장발달단계의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야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또는 이유가 없는 범행이 발생되고 있다. 범죄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한 번 한 것인데 그렇게도 나쁘냐”는 식의 항의 섞인 반론이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청소년은 물론이고 일반청소년에게도 범죄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고 자신의 '재미'만을 추구하기에는 타인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도덕성의 회복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최근 우리사회가 각종 범죄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하여 묵과해 가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점에서는 그 순간 만 넘기면 지나갈 수 있다는 식의 허용의식이 만연해 있음을 자각하고 이들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전력투구가 있어야 하겠다.

넷째, 비행청소년들의 45%가 범행 후 자신에게 닥쳐올 결과를 몰랐다고 하였다. 여기에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응답을 합치면, 59%의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게 될 과정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78%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고민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드리기는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상당수가 자신들의 행위결과로 인하여 앞으로 닥치게 될 일들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는 범죄자가 당하게 되는 자유의 속박과 불이익들이 제시됨으로써 그들의 범죄행위를 실행에 옮길 때, 고민하고 좌절당하게 할 생각의 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28%에 불과하였다. 그 영향을 알지 못했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69%이다.

사실 해외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직접 접하기 이전까지는 자신의 범죄행동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는 현행 형벌제도가 갖고있는 지극히 취약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어느 정도나 나쁜 것인가를 깨닫을 기회가 극미하다. 더군다나 자신의 범죄 원인이 타인과 사회에 있다고 믿는 많은 범죄자들은 ‘교정교화’로부터는 너무도 소원한 거리에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한가지 가설이 있다. 곧, 범죄자 자신에게 닥쳐올 부정적인 결과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하게 될 고통을, 사전에 범죄자가 안다면 그만큼 범죄를 행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 볼 때 이 가설이 성립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행청소년과 범죄자를 위하여 그들의 범행이 스스로에게 가져다 줄 처벌 뿐 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통한 교육훈련, 현장 체험과 견학, 또는 학습의 장을 통하여 내재화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실시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결과는 비행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수가 (55%) 자신들의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만나게 되면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한 경우가 76%이었다. 특히,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아는 경우에는 범죄로 인한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발견사항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비행청소년들이 생각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자신들의 범죄피해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내적 심리상태를 보면,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사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유가 어떤 것이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학우들과의 관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었던 ‘소중한 관계’들이 부서진 것을 회복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이들의 욕구와 바람을 지원해주는 것이 그들과 우리의 사회를 위하여 비행과 범죄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책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2.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운영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은 실험적으로 우선 보호관찰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충분한 의의가 있다. 비행청소년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그들의 파괴된 관계(broken relations)를 회복시키며 지역사회에 통합할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곧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비행과 범죄의 요인이 지역사회와 학교환경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과 바로 이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그곳에서 피해자가 속출됨으로써 비행청소년들의 사회환경은 범인성 환경으로 심화되어 가는 악순환을 상기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프로그

램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하여 몇 가지 운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자들은 시작부터 전체 중재과정 (mediation process)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밝힐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지표명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행동지침 (behavior principles)을 따라야 하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대인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이성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감하게 쳐우되어야 함이 주지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이 갖는 범죄피해자와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여 그들이 피해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가질 수 있는 내적인 갈등과 불안상태를 적절하게 다루어 줘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재프로그램을 진행할 중재자 (mediator)는 전문적 교육훈련을 받은 자격증소지자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교정사회사업을 전공하고 필요한 교육훈련

을 받은 현장경험이 있는 자라면 최상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을 새로운 교정이념을 성취하기 위한 회복적 사법정의의 일선에 세우고, 이를 교정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정’과 행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프로그램의 참여자,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나아가서는 본 프로그램의 운영절차나 과정이 철저하게 ‘교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위하여 가치와 철학이 내재화된 전문가가 매우 바람직하다. 아무리 사회과학적으로 입증된 전문적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운영방법과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문적 교정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환경의 요소 못지 않게, 바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의 자질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을 추구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미완성된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갈등과 문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적응해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할 때, 중재자의 역량이 주목을 끈다고 하겠다.

셋째, 범죄청소년이 자신들의 범행을 직시하고 행동결과를 책임 (accountability) 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사법정의 (justice)를 이루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처리 또는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형벌제도는 두 번째 요소에 매우 소홀히 하고 있거나 처음부터 문제로 삼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가한 고통과 악영향을 인식하게 될 기회가 필요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범행에 무감각해져서 비인간적이고 처참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사실상 범죄의 흉악성은 피해자에게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행·범죄청소년들이 자신의 범행의 잘못됨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정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진전은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된 범행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을 진정한 ‘교정 프로그램’의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일반인과 동일한 ‘인간’으로서 처우해야 한다.

범죄자들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지극히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의 그릇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부과되는 처벌이지만, 그 행동을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인간 자체를 경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경멸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는 역시 분노와 오기가 생기가 된다. 그래서 더욱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인간으로서 더욱 경멸을 받게되는 현실의 모순이 반복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성격적,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화의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적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 가를 시사해준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취급받을 때, 가장 순수해지고 자

신에게로 돌아가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논의(Discussion)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범죄와 비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약이 있을 수도 없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받아지기 위해서는 우선 소규모의 실험적 운영으로 그 운영과정 (operation process)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해줄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단적으로 언급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체 과정을 완료하는 것이 다른 기존의 형벌에 부가적으로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금형의 대안으로 활용될 때, 교정시설의 인구를 줄여줄 수 있지만 다른 형벌에 보충형벌이 된다면 사법체계의 망을 확장시키는 (Widening the Criminal Net) 결과를 초래하고, 사법체계 전체적으로 보아 교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의도되지 않는 문제점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그리고 준비단계로서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게 될 때, 다른 문제점들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해자가 결국은 사법당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조건에서 오는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매우 다양한 범죄자를 채우하게 되는 과정에서 본 중재프로그램이 범죄자처리에 있어서 공정성(fairness)을 어느 정도나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

참 고 문 헌

- 대검찰청(1999).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백서.
- 문선화·김기태·이진환·신복기·박병현(1995). 부산지역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모델 개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정신병원, 중등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27호.
- 문성호·황의조(1998). 청소년보호법의 한계와 과제, 사회과학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문제민(1997).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적 과제, 형사정책연구소식. 1·2월. 통권 제39호.
- _____(1999). 비행청소년의 의식과 가치관, 형사정책연구소식. 5·6월, 통권 제53호.
-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백서
- _____(1999). 청소년백서.
- 박상기·손동권·이순래(1997).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 배임호(1993). *Social Work in Criminal Justice: Its Demand and Response*. 서울 : 홍익재.
- _____(1995).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전 :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제5호.
- _____(1997). 범죄 피해자 (Crime Victim)의 형벌에 관한 태도 조사 -미국과 New Zealand를 중심으로, 교정연구(한국교정학회). 제7호.
- _____(1999). 비행청소년을 위한 합리적 행동치료 (Rational Behavior Therapy)활용방안, 교정연구(한국교정학회). 제9호.

- _____(1999).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과적 도입, 운영, 및 정착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9호.
- 법무연수원(1998). 범죄백서.
- 유석원(1997). 보호관찰제도의 운영방안, 보호. 법무부. 통권4호.
- 이순길(1994). 한국교정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제교정세미나 자료집 (연세대장기원기념관).
- 이순래(1997). 소년비행의 최근 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9·10월. 통권 제43호.
- 이윤호(1992). 90년대 한국교정의 전망과 발전방향, 교정연구. 제2호.
- 이형국(1995). 교정선진화의 방향, 한국교정학회 제10회 학술발표회자료집.
- 장규원(1998).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성인범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준현(1991). 행형의 이념으로서 교정에 관한 소고, 교정연구. 창간호.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비행청소년상담프로그램 I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최병각 역(1995). 소년법에서의 교육과 응보, 형사정책연구소식. 3·4월. 통권 제28호.
- 최창섭(1995). 청소년 유해미디어 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오늘의 청소년. 제10권 9호(통권 104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Acton, H.(1969). *The Philosophy of Punishment*. Macmillan St. Martin's Press.
- Bakker, M.(1994). "Repairing the Breach and Reconciling the Discordant : Medi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North Carolina Law Review*. vol. 72 (6).
- Barak, G.(2000). "Repressive Versus Restorative and social Justice: A Case for Integrative Praxis", *Contemporary Justice Review*. Vol. 3(1).
- Bronstein, A., & Cainsborough, J.(1996). "Prison Litig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Overcrowded Times*. 7(3).
- Brown, M.(1996). "Refining the Risk Concept Decision Context as a Factor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Risk and Program Effectiveness", *Crime & Delinquency*. 42(3).
- Buddress, L.(1997). "Federal Probation and Pretrial Services-A Cost-Effective and Successful Community Corrections System", *Federal Probation*. 61(1).
- Burnside, J., & Baker, N.(1994). *Relational justice: Repairing the Breach*. Winchester: Waterside Press.
- Charles W. C.(1995). "Dangerous Currents: A New Crime Wave is Coming. How will We Respond?", *Justice Report*. Winter.
- Colson, C.(1995). "Dangerous Currents: A New Crime Wave is Coming, How will we Respond?", *Justice Report*. Winter. Washington, D. C.: Justice Fellowship.
- Consedine, J.(1995). "Restorative Justice: Healing the Effects of Crime", *Lyttelton*, New Zealand Publications.
- Cragg, W.(1992). *The practice of punishment: towards a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New York: Routledge.
- Crawford, T. et al.(1990). *Restorative Justice: Principles*. Washington D.C.:Justice Fellowship.

- Feeley, M., R. Berk and Campbell, A.(1992). "Between Two Extremes: An Examination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Community Service Order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S. Sentencing Guideline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66(1).
- Galaway, B.(1995). "Victim-Offender Mediation by New Zealand Probation Officers: The Possibilities and the Reality", *Mediation Quarterly*. 12 (3).
- Gendreau, P.(1993). "The 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with Offender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 and Community Alternatives, Philadelphia.
- Goodman, H., George S. Getzel and Ford, W.(1996). "Group work with High-Risk Urban Youths on Probation", *Social Work*. 41(4).
- Greenwood, Petee W.(1998). "Investing in Prisons or Prevention: The State Policy Maker's Dilemma", *Crime & Delinquency*. 44(1).
- Hatchett, G.(1998). "Why We Can't Wait: The Juvenile Court in the New Millennium", *Crime & Delinquency*. 44(1).
- Higgins, D., & Claire, R.(1996). "North Carolinians Want Alternative Sentences for Nonviolent Offenders", *Overcrowded Times*. 7(4).
- Hogg, R. and Brown, D.(1998). *Rethinking law and order*. Sydney: Pluto Press.
- Hughes, G., Pilkington, A and Leisten, R.(1998). "Diversion in

- a culture of severity", *the Howard Journal*. 37(1).
- Kuhn, A.(1996). "Imprisonment trends in Western Europe", *Overcrowded Times*, 7(1).
- Marshall, T.(1995). "Restorative Justice on Trial in Britain", *Mediation Quarterly*. vol. 12 (3).
- Mika, H.(1995). "Editor's Notes", *Mediation Quarterly*. 12(3).
- Muncie, J.(1996). "Punishment in the Community: Seven Years on",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29(2).
- Nieto, M.(1996). *Changing Role of Probation in California's Criminal Justice System*. Sacramento, California: California Research Bureau.
- Office of Juvenile Justice & Delinquency Prevention(1994).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Program Summary", *OJJDP*, US Department of Justice.
- Quinlan, M.(1995). "We can make a Difference: Keys for Solving the Prison Program", *Justice Report (Justice Fellowship)*, Winter.
- Roy, S.(1993). "Two types of Juvenile Restitution Programs in Two Midwestern Counties: A Comparatives Study", *Federal Probation*. 57(4).
- The Princess Royal(1990). *What is Punishment for and How does it Relate to the Concept of Commu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mbreit, M. S.(1995). "Mediating Interpersonal Conflicts: A Pathway to Peace", West Concord, Minnesota: CPI

Publishing.

Van Ness, D. W., Carlson, D. R., Crawford, T., & Strong, K.(1989). *Restorative Justice: Theory*. Washington, D.C.: Justice Fellowship.

White, R.(2000). "Social justice, community Building, and Restorative Strategies", *Contemporary Justice Review*. Vol. 3(1).

Wooldredge, J.(1996). "Research Note: A State-level Analysis of Sentencing Policies and inmate Crowding in State Prisons", *Crime & Delinquency*. 42(3).

Zehr, H.(1990). *Changing Lenses*. Scottale, Pennsylvania: Herald Press.

_____(1995). "Justice Paradigm Shift? Values and Visions in the Reform Process", *Mediation Quarterly*. vol. 12(3).

부 록

본 연구를 위해서 반구조화된 면접지침을 통한 면접조사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면접후 수집된 데이터 내용을 분석 정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여기에 첨부한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설문지는 일종의 coding sheet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설문을 만드는 원리 (principles)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Case Number :

--	--	--	--	--	--

1. 귀하의 나이는 무엇입니까?

_____ 1) 15

_____ 2) 16

_____ 3) 17

_____ 4) 18

_____ 5) 19

_____ 6) 20

_____ 7) 21

_____ 8) 22

_____ 9) 23

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_____ 1) 학생

_____ 2) 킥 서비스 종사자

_____ 3) 일용직 노동자

_____ 4) 식당종업원

_____ 5) 회사원

_____ 6)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_____ 7) 무직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 1) 여

_____ 2) 남

4. 해당되는 보호관찰기간은 어느 것입니까?

- _____ 1) 6개월
- _____ 2) 1년
- _____ 3) 2년
- _____ 4) 3년
- _____ 5) 무응답

5. 해당 보호처분은 어느 것입니까?

- _____ 1) 1.2
- _____ 2) 1.3
- _____ 3) 6호
- _____ 4) 7호
- _____ 5) 무응답

6. 얼마의 사회봉사시간을 받았습니까?

- _____ 1) 40시간
- _____ 2) 50시간
- _____ 3) 80시간
- _____ 4) 100시간
- _____ 5) 120시간
- _____ 6) 150시간
- _____ 7) 200시간
- _____ 8) 해당없음
- _____ 9) 무응답

7. 얼마의 수강명령시간을 받았습니까?

- _____ 1) 40시간
- _____ 2) 50시간
- _____ 3) 80시간
- _____ 4) 해당없음
- _____ 5) 무응답

8.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합치면 몇 시간이 됩니까?

- _____ 1) 41시간
- _____ 2) 80시간
- _____ 3) 82시간
- _____ 4) 120시간
- _____ 5) 200시간
- _____ 6) 의미없음
- _____ 7) 해당없음
- _____ 8) 무응답

9. 죄명은 무엇입니까?

- _____ 1) 특수절도
- _____ 2) 절도
- _____ 3) 특수강도
- _____ 4) 강도
- _____ 5) 사기
- _____ 6) 무응답

10.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 _____ 1) 무학
- _____ 2) 초등학교 중퇴
- _____ 3) 초등학교 졸업
- _____ 4) 중학교 재학
- _____ 5) 중학교 중퇴
- _____ 6) 중학교 졸업
- _____ 7) 고등학교 재학
- _____ 8) 고등학교 중퇴
- _____ 9) 고등학교 졸업
- _____ 10) 대학교 재학
- _____ 11) 대학교 휴학
- _____ 12) 무응답

11. 학업중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자퇴
- _____ 2) 집안형편곤란
- _____ 3) 정신질환
- _____ 4) 무응답
- _____ 5) 해당없음

12. 공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_____ 1) 없다
- _____ 2) 1명
- _____ 3) 2명
- _____ 4) 3명

- _____ 5) 4명
- _____ 6) 5명
- _____ 7) 6명
- _____ 8) 7명
- _____ 9) 8명 이상

13. 공범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_____ 1) 학교친구 또는 학교선후배
- _____ 2) 동네 친구
- _____ 3) 동네친구 와 학교선후배
- _____ 4) 친척형제
- _____ 5) 우연히 만남
- _____ 6) 해당없음
- _____ 7) 무응답

14. 범죄경력이 있습니까?

- _____ 1) 없다
- _____ 2) 1회
- _____ 3) 2회
- _____ 4) 3회
- _____ 5) 4회
- _____ 6) 5회이상
- _____ 7) 무응답

15. 과거범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_____ 1) 오토바이 훔치기

- _____2) 빈집털기
- _____3) 금품갈취
- _____4) 폭력
- _____5) 유해화학(본드흡입)
- _____6) 해당없음
- _____7) 무응답

16. 가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1) 집이 싫어서
- _____2) 학교가 싫어서
- _____3)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 _____4) 돈 벌기 위해서
- _____5) 그냥 무작정
- _____6) 해당없음
- _____7) 무응답

17. 현 범죄가 이루어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 _____1) 자정에서 새벽 2시
- _____2) 새벽2시에서 4시
- _____3) 새벽4시에서 6시
- _____4) 오전6시에서 8시
- _____5) 오전8시에서 10시
- _____6) 오전10시에서 정오
- _____7) 정오에서 오후2시
- _____8) 오후2시에서 4시
- _____9) 오후4시에서 6시

- _____10) 오후6시에서 8시
- _____11) 밤8시에서 10시
- _____12) 밤10시에서 자정

18. 현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 _____1) 주택가
- _____2) 지역의 거리
- _____3) 가게상점
- _____4) 상가지역 (타지역)
- _____5) 학교근처
- _____6) 아파트단지 입구
- _____7) 공원
- _____8) 기타

19. 피해자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_____1) 전혀 모르는 관계
- _____2) 가게주인과 고객관계
- _____3) 동네에서 아는 관계
- _____4) 친구와 관련된 관계
- _____5) 무응답

20. 현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만원

21. 현재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_____ 1) 없다
- _____ 2) 학생
- _____ 3) 중졸 검정고시
- _____ 4) 고졸 검정고시
- _____ 5) 기술자격증
- _____ 6) 직장인
- _____ 7) 퀵 서비스 종사자
- _____ 8)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 _____ 9) 기타
- _____ 10) 무응답

22.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 _____ 1) 잘 몰랐다
- _____ 2) 별 생각 없었다
- _____ 3) 나쁜일이다
- _____ 4) 무섭다
- _____ 5) 있을 수 있다
- _____ 6) 범죄 후 안 잡히면 된다
- _____ 7) 무응답

23.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범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 _____ 1) 후회한다
- _____ 2) 하면 안된다

- _____ 3) 나쁘다
- _____ 4) 무섭다
- _____ 5) 좋다
- _____ 6) 별 생각 없다
- _____ 7) 무응답

24.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공범의 유혹으로
- _____ 2) 돈이 필요해서
- _____ 3) 술 때문 우발적으로
- _____ 4) 범죄라고 생각 않음
- _____ 5) 재미로
- _____ 6) 뉴스를 보고 범죄하게 되었다
- _____ 7) 이유없다
- _____ 8) 무응답

25. 범죄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사전에 알았습니까?

- _____ 1) 알았다
- _____ 2) 알지 못했다
- _____ 3) 생각해 본적 없다
- _____ 4) 무응답

26.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향을 알았다면, 어느 정도나 알았습니까?

- _____ 1) 매우 잘 알았다
- _____ 2) 잘 알았다
- _____ 3) 알았다
- _____ 4) 몰랐다
- _____ 5) 생각해 본적 없다
- _____ 6) 해당없음
- _____ 7) 무응답

27.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향을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 _____ 1) 몰랐다
- _____ 2) 입장을 바꿔 보고 생각했다
- _____ 3) TV를 통해 알았다
- _____ 4) 무서워하는 피해자보고 알게 되었다
- _____ 5) 해당없음
- _____ 6) 무응답

28. 범죄하면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알았습니까?

- _____ 1) 매우 잘 알았다
- _____ 2) 잘 알았다
- _____ 3) 알았다
- _____ 4) 몰랐다
- _____ 5) 생각해 본적 없다

29. 자신에게 닥쳐올 결과를 알았다면, 범죄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까?

- _____ 1) 절대로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 _____ 2) 인했을 것이다
- _____ 3) 고민할 것이다
- _____ 4) 했을 것이다
- _____ 5) 생각 안했다
- _____ 6) 무응답

30. 범죄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장 미안한 생각이 듭니까?

- _____ 1) 부모
- _____ 2) 부
- _____ 3) 모
- _____ 4) 피해자
- _____ 5) 친척
- _____ 6) 자기 자신

31. 왜 위의 사람이 가장 미안한 생각이 듭니까?

- _____ 1) 부모님께 걱정끼쳐 드렸기 때문에
- _____ 2) 부모님 속상하게 해서
- _____ 3) 부모님 고생시켜 드렸기 때문에
- _____ 4) 부모님과의 약속 때문에
- _____ 5)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 _____ 6) 기타
- _____ 7) 무응답

32. 범죄직후 가졌던 느낌은 무엇이었습니까?

- _____ 1) 기분좋다
- _____ 2) 두렵다
- _____ 3) 후회한다
- _____ 4) 다시는 안한다
- _____ 5) 별 느낌 없다
- _____ 6) 무응답

33. 범죄직후 무엇이 가장 필요하였습니까?

- _____ 1) 없다
- _____ 2) 부모님
- _____ 3) 상담자
- _____ 4) 돈
- _____ 5) 음식
- _____ 6) 기타
- _____ 7) 무응답

34. 현재 가장 시급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 _____ 1) 없다
- _____ 2) 돈
- _____ 3) 자격증
- _____ 4) 공부
- _____ 5) 기타
- _____ 6) 무응답

35. 범죄피해자를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겠습니까?

- _____ 1) 반드시 만나고 싶다
- _____ 2) 만나고 싶다
- _____ 3) 만나고 싶지 않다
- _____ 4) 전혀 만나고 싶지 않다
- _____ 5) 만나든 만나지 않든 상관없다
- _____ 6) 만났다

36. 만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용서를 빌기 위해
- _____ 2) 위로하기 위해
- _____ 3) 왜 고소했나 묻기 위해
- _____ 4) 해당없음
- _____ 5) 무응답

37.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얼굴 마주보기 싫다
- _____ 2) 죄송하기 때문에
- _____ 3) 사건을 회고하기 싫어
- _____ 4) 피해자의 감정이 나뉘까봐 만나기 싫어함
- _____ 5) 합의를 했기때문에
- _____ 6) 해당없음
- _____ 7) 무응답

38. 만나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 _____ 1) 죄송하다고 말함
- _____ 2) 고맙다 (사건이 처리됨)
- _____ 3) 입장을 바꿔보라고 권유
- _____ 4) 무응답

39. 범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바로 잡겠습니까?

- _____ 1)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다
- _____ 2)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떳떳하게 살고싶다
- _____ 3)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싶다
- _____ 4) 좋은 일을 하거나 불우이웃을 돕고싶다
- _____ 5) 평범하게 살고 싶다
- _____ 6) 생각 없다
- _____ 7) 무응답

40. 보호관찰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_____ 1) 매우 만족
- _____ 2) 만족
- _____ 3) 그저 그렇다
- _____ 4) 불만족
- _____ 5) 매우 불만족
- _____ 6) 무의미하다

41. 보호관찰을 만족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범죄예방에 도움됨
- _____ 2) 방문에 부담 없음

- _____ 3) 보호관찰소의 선생님들 친절함
- _____ 4) 기타
- _____ 5) 해당없음
- _____ 6) 무응답

42. 보호관찰을 불만족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1) 시간낭비이며 도움이 안된다
- _____ 2) 보호관찰소까지 거리가 멀다
- _____ 3) 사건을 회고하게 만듦
- _____ 4) 기타
- _____ 5) 해당없음
- _____ 6) 무응답

43. 귀하는 다시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__ 1)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
- _____ 2) 재범하지 않겠다.
- _____ 3) 그저그렇다
- _____ 4) 재범할 지도 모르겠다.
- _____ 5) 재범할 것이다.

44. 누구의 영향으로 또는 어떤 계기로 재범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까?

- _____ 1) 부모님이 고생하기 때문
- _____ 2) 주위 사람의 충고
- _____ 3)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
- _____ 4) 범죄해보니까 나쁘다는 것을 알아서

- _____5) 스스로 결심
- _____6) 보호관찰 때문에
- _____7) 무응답

45.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1) 잘 모르고 범죄했기 때문
- _____2) 습관때문
- _____3) 해당없음
- _____4) 무응답

46.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 _____1) 운동잘함
- _____2) 음악잘함
- _____3) 대인관계 원만
- _____4) 청소잘함
- _____5) 손재주가 있음
- _____6) 기타
- _____7) 없다
- _____8) 무응답

47. 주위 사람들은 귀하에게 주로 장점을 이야기합니까?

혹은 단점을 이야기합니까?

많이 이야기를 듣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 _____1) 성질이 급하다
- _____2) 돈 절약을 잘 못한다

- _____3) 결단력이 부족하다
- _____4) 장난이 심하다
- _____5) 손재주가 있다
- _____6) 대인관계 좋다
- _____7) 기타
- _____8) 없음
- _____9) 무응답

48. 위의 장점 혹은 단점은 주로 누가 이야기합니까?

- _____1) 부모
- _____2) 형제자매
- _____3) 친척
- _____4) 학교 선생님
- _____5) 학교 친구
- _____6) 동네 친구
- _____7) 이웃
- _____8) 해당없음
- _____9) 무응답

49. 귀하는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__1) 내성적
- _____2) 외향적
- _____3) 양측면 모두 가지고 있음

50. 주위 사람들은 귀하를 주로 어떻게 대해줍니까?

- _____1) 나를 무관심하게 대한다

- _____ 2) 나를 부정적으로 대한다
- _____ 3) 나를 온정적으로 대한다
- _____ 4) 나를 부정적 또는 온정적으로 동시에 대한다
- _____ 5) 무응답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